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제한〉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3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제한	2

I. 개요

1.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30.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7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i)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중개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지 또는 신고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ii)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안 제4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 ----- ----- ----- ----- -----

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u>통신판매중개자</u> <u><신 설></u>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u> <u>제25조의7(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 제한)</u> <u>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u>
---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생략) ② ~ ④ (생략)	<u>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46조(과태료) ① ----- ----- ----- -----. 1. (생략) <u>1의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u> <u>1의3.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 중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를 하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통신판매중개 금지 등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가 되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7호1)에 따르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함.
- 현행법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해 정보 게시(제25조의2),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제25조의3),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제25조의4), 구매·사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25조의5)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아울러 현행법 제25조의6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확산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³⁾,

이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데 그칠 뿐 통신판매중개 중지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통신판매중개 중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직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온라인 유통을 보다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안 제25조의7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통신판매중개 중지 의무에 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 제25조의6에 따른 자율적 관리 지원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제품사진)를 제공하고 통신판매중개 중지 결과를 회신받는 체계를 운영 중임.

<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 지원 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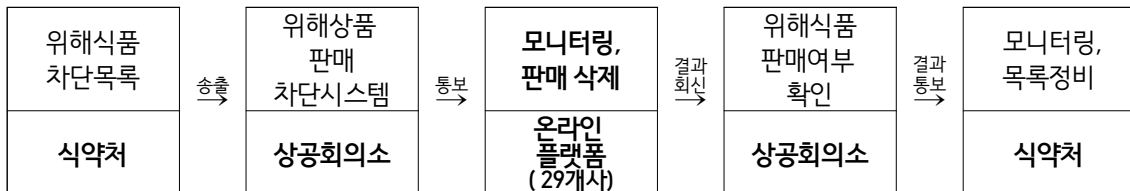
-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6
- **(제도 목적)**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스스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 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확산
- **(식약처 지원 방법)**
 -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 정보** (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제품사진)를 온라인 유통사에 송출하여 온라인 유통사가 위해식품 판매여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판매 중인 제품을 삭제 조치하도록

유도함.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가입한 29개 온라인 유통사(11번가, 쿠팡 등) 대상으로 위해제품의 목록 정보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 4,901개 제품('26. 8. 27.기준)

※ 해외직구식품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송출 및 처리 절차



- 위해식품 차단목록 정보(제품명·제조사·검출성분·제품사진)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Open API)를 통해 사업자 포함 국민 누구나에게 공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제도에서는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통신판매중개 중지
지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고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율적 조치에 의
존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신고의무는 통신판매중개 중지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에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인바,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상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라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중지의무에 더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25조의7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의무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와 연계되는 의무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등 객관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보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25조의7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그러나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로 ‘통신판매중개의 금지’만 예시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 ‘필요한 조치’의 개략적인 유형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4) [참고 2]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관련 입법례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해식품의 즉각적인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아니고, 통신판매중개 중지의무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의무 부과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사실을 알린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법무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이고 플랫폼 특성상 위해제품의 판매사실을 독자적으로 인지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중지·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직접 중지·신고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위해정보 및 관련 조치를 입점업

체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소비자 안전 확보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유통 방지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통신판매중개자는 개별 상품의 원료·성분이나 위해성을 직접 확인·판단할 권한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통신판매중개 중지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등으로 의무 발생요건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나 위해성 판단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신판매중개 중지 외에 신고의무와 과태료까지 부과할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잉 차단 우려와 현행 자율관리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정보 제공 및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기준을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공식 통보 등으로 명확히 하고, 중지의무와 별도로 신고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삭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실히 중지조치를 이행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면책규

정을 마련하고, 기존 유통상품에 대한 적용을 위해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
--------	----------------

○ (개요) 해외직구식품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식약처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어려움

- 그럼에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원료·성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관리 하고 있음

⇒ **구매·검사, 위해식품 차단, 정보제공, 소비자 구매주의 홍보 등 실시**

○ (법체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법」 및 하위규정 개정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정의 및 위해정보 게시('21.8.17) →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22.6.10) → 구매검사 및 실태조사('23.6.13)

○ (원료·성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관리('26.8.27. 현재 314종)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구분	분류	지정	비고
합 계		314종	
마약류	마약류	23종	암페타민, 에페드린, HHCH, HHCP 등
의약품	의약품 유효성분 및 한약 등	152종	멜라토닌, 테오브로민, 아젤라스틴, 시트룰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 등
식품 등	부정물질 등	139종	실데나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석송, 당살초, 노랑협죽도, 대마씨(유), 파피씨드, 곤약(미니캡젤리)

○ (구매·검사) 국내외 온라인에서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마약류·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08년부터~)

- '25년 6,000건→ '26년 6,600건으로 위해도 높은 부정물질 검사 확대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구매·검사(건)		1,300	1,300	1,630	3,000	3,000	3,100	3,400	6,001
위해성분 확인	건수(건)	107	125	148	296	273	281	344	871
	비율(%)	8.2	9.6	9.1	9.9	9.1	9.1	10.1	14.5

○ (위해식품 등 공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르게*”에 정보공개

- 총 4,901개(26.8.27.)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화 및 위해식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정보 제공

* 해외리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1372소비자상담센터, OPEN API 등 연계

○ (위해식품 차단)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반입·판매·유통 차단

- (관세청) 해외직구식품 협업검사 인력 운영(17.3~)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 차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해식품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유통사(29개 온라인 플랫폼)가 가입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위해식품 판매 중단

○ (대국민 홍보) 소비자 경각심 제고 및 해외직구식품 구매 前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홍보



【참고 2】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관련 입법례
---------------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과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